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개정 2026. 1. 2.>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896,400	2,317,100
2	3,038,400	2,391,800
3	3,180,100	2,477,300
4	3,322,000	2,574,400
5	3,463,400	2,684,300
6	3,668,200	2,816,200
7	3,872,200	2,948,500
8	4,075,900	3,080,700
9	4,278,800	3,211,900
10	4,481,600	3,343,400
11	4,662,200	3,442,300
12	4,842,600	3,541,300
13	5,020,600	3,640,700
14	5,200,000	3,739,800
15	5,377,800	3,838,500
16	5,550,900	3,917,400
17	5,723,200	3,995,500
18	5,896,100	4,074,600
19	6,067,000	4,152,500
20	6,238,400	4,231,200
21	6,381,100	4,306,800
22	6,522,800	4,383,100
23	6,665,000	4,459,100
24	6,806,500	4,534,900
25	6,948,400	4,610,300
26	7,067,000	4,662,700
27	7,187,000	4,714,800
28	7,306,100	4,767,300
29	7,424,400	4,817,800
30	7,543,300	4,869,900
31	7,635,200	4,921,800
32	7,727,300	4,967,300
33		5,012,900
34		5,057,600
35		5,102,700
36		5,144,6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